

2023년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재활사(비상근)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시행되는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언어재활사(비상근)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6. 14.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채용형태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언어재활사(비상근)	계약직	00명	· 관내 치료사 마배치 어린이집 현장방문 치료 및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자¹⁾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²⁾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³⁾ ※ 영유아 대상 언어치료업무 유경험자 우대

1)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자

○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

구분	응시자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언어재활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관련 민간자격 공인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등록'으로 구분되며 '공인'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확인 가능

2)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006. 10. 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 10. 25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홈페이지)	2023. 6. 14.(수)	서류 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접수(방문/온라인)	2023. 6. 14.(수) ~ 6. 30.(금) 24시까지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2023. 7. 3.(월) 16시 이후	
면접심사(2차)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근무시작일	2023. 7. 10.(월) 이후	
근무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 2023. 12. 31.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 (면접대상자에 한 함)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경력증명서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경력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①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예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 및 파기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기준으로 면접당일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3. 6. 14.) 기준

4

서류접수 기간 및 근무처

- 접수기간 : 2023. 6. 14.(수) ~ 2023. 6. 30.(금) 24시까지
- 접수방법 및 장소 ※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메일(iccicrecruit@naver.com)로 접수
 - ※ 메일제목은 '지원분야-지원자 이름'으로 작성(예시: 치료사(상근)-홍길동)
 - (방 문 접 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 ※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내 접수가능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602, 남동체육관) 4번 게이트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계약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 2023. 12. 31.
- (보수기준) 센터 내규에 따른 회기당 활동비 지급
- (근무장소) 사업 참여 어린이집 내
- (근무형태) 매월 사업 참여 어린이집 방문지원

6

기타사항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근무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1개월 간 수습기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 오유진 ☎032-431-4608)